

의안번호	2215203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6. 1. 9.
추계번호	25B685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의2(시정명령) 신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항) 4. 제3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은 삭제	의무규정
3	안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신 설> 1.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의2(시정명령)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0조(벌칙)	
3	안 제42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한 후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1]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u>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개정안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수단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²⁾,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2)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음